

전주지방법원 2022. 6. 22 선고 2022가단125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소외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 10. 20. 체결된 증여계약을 4,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3. 일부 기각 부분: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박준범

별지